

2025년 임도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용역(1차) 과업지시서



- 1. 과 업 명 : 2025년 임도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용역(1차)
- 2. 과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21일까지
- o 본 과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21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
 - 과업기간 중 강우·강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·강설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
 -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

3.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

- o 최근 임도는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·관리뿐만 아니라, 산불,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
- o 이에,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타당성평가를 통해 예정노선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설 목적에 부합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도록 하여야 함
 - *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조 및 별표1
- o 따라서, 임도 타당성평가의 고도화를 도모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튼튼한 임도 및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

4. 과업범위

- 가. 공간적 범위: 2026년도 임도개설 예정지 52.95km
 - * 춘천 9.50km, 홍천 26.40km, 수원 4.05km, 인제 13.00km
- ** 현장여건 및 관리소 사정에 따라 대상지 변동될 수 있음
- 나. 내용적 범위: 대상지의 정량적·과학적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임도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

5. 과업내용

가.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

- o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
- o 대상지별 공간분석(임황, 지황,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)
- o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(동·식물 서식현황 등)
- o 대상지별 종합 분석

나.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

- o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
- 인근지역 현황, 임황, 지황, 수리·수문 현황, 야생동·식물 서식현황, 주민의견 수렴. 기타 특이사항 등
- *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별 협조 요청
- o 사전 현황자료 작성

다. 타당성 평가 및 결과

- o 평가위원(산림공학 전문가, 환경·생태 전문가 등)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
- o 임도 타당성평가 종합판정
- 예정노선의 적정성, 부적합의 사유 및 검토제안노선 제시
- 0 임도 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
- 개선방향 도출 및 타당성평가 고도화

6. 과업수행 일반지침

가. 과업지침

1) 타당성평가는「산림자원법」제9조,「산림자원법 시행규칙」제4조 제2항 및 [별표1] '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'에 따라 실시한다.

- 2) 임도사업의 필요성·시공성·재해안전성·효율성·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밖의 특이사항을 점검한다.
- 3) 타당성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.

나. 과업수행 준수사항

- 1)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, 과업 착수 전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, 위험성 평가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
 -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
 -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서, 자격증 사본, 보안각서 등
- 2)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,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, 이에 따라 추가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.
- 3)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.
 -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
 -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과업량이 증·감되었을 때
 -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
- 4)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5)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,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6)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.
- 7)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
- 8)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,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,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.

9) 보안사항

- 계약자는 조사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이 과업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, 복사·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
-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,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.
- 10)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,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11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, 연도,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한다.
- 12) 다음의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.
 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
 -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
- 13)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
 -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없이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-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

14) 하자책임관계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

나. 안전관리

- 1)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
 -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**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**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<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>

- ▲ 안전보건관리체계(인력·조직 구성, 위험성평가·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)
- ▲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▲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
- ▲ 사용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
- ▲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▲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
-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업 수행자는 미흡한 사항은 보완 대책 마련 및 개선한다.

<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>

-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하여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,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 분류
- o (평가분야) 안전보건관리체계, 실행수준, 운영관리, 재해발생 수준
- o (평가항목)
- (안전보건관리체계) 일반원칙, 계획수립, 역할 및 책임
- (실행수준) 작업자 보호, 안전점검, 이행확인, 교육 및 기록, 안전작업허가
- (운영관리) 신호 및 연락체계, 위험물질 및 설비, 비상대책
- (재해발생 수준) 산업재해 현황
 - *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(필요할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가능)

- 2)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
 - "과업수행자"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,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 - "과업수행자"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 -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,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다. 과업 수행 및 보고

- 1)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림청의 해석에 따른다.
- 2) 과업수행자는 현장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착수보고회 : 계약 후 2주일 이내(사전협의 결정)
 - 중간보고회 : 과업 진행율 50% 시점(사전협의 결정)
 - 최종보고회 : 과업 진행율 90% 시점(사전협의 결정)
 - * 단, 사전협의에 의해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음
- 3)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최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

7. 성과품 제출

가.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,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나.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, 필요한 경우 한자・영어 혼용 가능
- 다.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
- 라. 장·절·목을 구분하고 1-가-(1)-(가) 순으로 작성
- 마. 보고서 규격
- 일반 보고서 크기 : A4규격(가로 210mm×세로 297mm), 제본 : 좌철
- 바. 용지 : 표지 200g/m³ 양면아트지, 내용 80g/m³ 모조지
- 사. 인쇄방식
- 표지 : 바탕 백색, 컬러 활자
- 내용 : 컬러활자로 양면인쇄
- 아. 보고서 제출
 - 착수·중간·최종보고회 자료 : 각 15부
 - 최종보고서 : 10부, 한글파일(*.hwpx)이 포함된 USB 2식
 - 기타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(발주처와 사전협의)

자. 타당성평가 보증 책임

- 설계 및 시공 시 현지와 불·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평가하되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타당성평가 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본 위탁 사업은 손해배상보험(공제) 가입대상이다.